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. 7. 19 선고 2016가단1610(본소), 2017가단10246(반소) 판결  
[소유권이전등기 · 유류분반환청구]

---

## 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B

변론 종결 2017. 6. 21.

판결 선고 2017. 7. 19.

## 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. 1. 12.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 제1항과 같다.

반소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5. 12. 11. 증여를 원인으로 한
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

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/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5. 12. 11.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던 형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, 같은 날 의성군에서 위 계약서에 관한 검인을 받았으며, 그무렵 법무사에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맡기는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계약서 작성에 앞선 2015. 9. 17.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, 다음 날 C에게서 여권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우편으로 교부받았고,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.

다.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던 중 C이 2016. 1. 10. 사망하였고, 배우자인 피고가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. 5. 2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5, 7, 8, 13, 14호증의 각 기재, 원고 본인신문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원고는 2010. 1. 12.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3,6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C이 사망하였으므로, C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피고

C이 2015. 12. 11.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피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/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### 3. 판단

가.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

앞서 본 증거들, 갑 제6, 9~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C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0.

1. 12.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수하였다고 인정되고,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.

① 원고는 2010. 1. 12.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.1. 12. 및 2010. 1. 13. 양일간 C에게 매매대금 36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, 원고 명의 계좌거래내역(갑 제10호증)이 위 주장에 부합하며, 위 송금 명목을 그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.

② 원고는 위 증여계약서 작성 전인 2015. 9. 25.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.

③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은 '2009. 12.경 C에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갔고 그 후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'는 취지의 사실확인서(갑 제9호증)를 작성하였고, 2014. 11. 24. D에게서 480,000원이 송금되었다는 원고 명의 계좌거래내역(갑 제12호증)이 그에 부합한다.

### 나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. 1. 1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
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종완

## 목 록

1. 경북 의성군 E 답 2,000㎡
2. 경북 의성군 F 답 2,000㎡. 끝.